##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(진성준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9347

발의연월일: 2025. 3. 25.

발 의 자:진성준ㆍ허성무ㆍ윤종군

김태년 • 서미화 • 박홍근

윤준병 • 박해철 • 문진석

허 영 의원(10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에 지원한 국고보조금의 교부실적과 해당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집행실적을 기획재정부장관,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각각제출하여야 함.

하지만 일부 중앙관서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국고보조금을 지원하고 도 이에 대한 상세한 교부 및 집행내역을 국회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,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의 경우 제출 항목을 세분화하여 법률에 명시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의 교부 및 집행실적을 지방자치단체별·회계별·계정별로 작성하여 제출하도 록 하려는 것임(안 제54조).

법률 제 호

##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4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한 국고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별·회 계별·계정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4조(보조금의 관리) 각 중앙관	제54조(보조금의 관리)
서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민	
간에 지원한 국고보조금의 교	
부실적과 해당 보조사업자의	
보조금 집행실적을 기획재정부	
장관,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	
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각각 제	
출하여야 한다. < <u>후단 신설&gt;</u>	<u>이 경우 지방자</u>
	치단체에 지원한 국고보조금은
	지방자치단체별 • 회계별 • 계정
	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
	<u>다.</u>